## 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☑조치 □기타)

요청대상 행위	□ 시스템 DISK 장애예방을 위해 DISK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정보(불량, 스토리지 이상신호 등)를 별도 서버에 수집하여 외부의 DISK 제조업체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망분리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
판단	□ 요청대상 행위는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
판단이유	<ul> <li>□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이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며(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 제1항 제5호),</li> <li>○ 다만, 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업무상 불가피하게 특정 외부기관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은 망분리 예외적용이 가능합니다. (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제2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)</li> </ul>
	□ 시스템 DISK의 이벤트 정보를 수집하여 제조업체로 전송하는 것은 전자 금융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업무상 불가피하게 특정 외부기관에 연결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.

- \*\* **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
 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  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 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